

#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15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99년 10월1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가. 제안이유

-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폐지
- 목적(안제1조) : 주민자치에 부합되도록 목적을 수정
- 구성(안제2조) : 당연직 위원을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규정
- 기능(안제3조) : 마을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 먼저 폐지조례안인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안과 비교하여 보면

- 제1조(목적)을 주민자치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제2조(구성)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산림 담당주사, 영농회장을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조정, 제3조(기능)제1호 “리자력개발에 관한사항”을 “마을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안과 유사

#### ■ 종합 검토결과

- 지방자치 실시로 인하여 주민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리자치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 리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목적과 기능면에 있어서 설치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리개발위원회 운영실태와 농촌현실을 판단할 때 재정비를 통한 실천조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날 경우 조속한 개정 또는 폐지가 요구됨.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1부 . 끝 .